#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4317

제안연월일: 2024. 9.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상정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25호	정을호의원	2024. 6.19.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7.24.)
	제810호	김선교의원	2024. 6.21.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7.24.)
	제975호	한정애의원	2024. 6.26.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8.)
	제1329호	고민정의원	2024. 7. 3.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8.)
	제1374호	김기현의원	2024. 7. 4.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8.)
	제2085호	이해식의원	2024. 7.22.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24.8.26.)

나.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 8.28.)는 이

상 6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4. 9. 3.)는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한편,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또한,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보다 장기적인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육아 휴학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 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 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돌봄·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의4제3호 중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말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학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휴학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시 휴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 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2(학생의 건강관리와 급 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 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 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
제23조의4(휴학)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학하게 한다. 1.•2.(생략)	제23조의4(휴학)
3.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3.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이하의 자녀를 말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